

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

〈편집자주〉

Q 콘센트의 제품의 경우 이미 배선기구업체에서 KS및 안전인증을 득한 모델이 있는데 당사가 개발 의뢰하여 모양과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요?

A 콘센트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전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

Q 형광등기구용 부품을 외국산을 사용하려 할 경우 예전에는 외국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도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 하였으나 2005.7월 1일 부터는 WTO 회원국간 상호인증 인정에 따라 국제 안전인증제도인 IECEE CB Scheme 인증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요?

A 전기용품안전인증 시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 신청제품에 사용된 부품 또는 부속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일 경우, 동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나, 동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CB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된 CB시험성적서 검토를 거쳐 동 부품 또는 부속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과 동일한 국제표준(IEC규격)에 따라 시험 하였다가 것이 입증된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또한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(KS)을 획득한 경우에도 동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그동안 안전인증기관들의 법령해석 미숙으로, 그 동안 동 부품 및 부속품이 IEC규격에 의해 외국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인증 획득 여부 확인만으로 동 부품 및 부속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.

이에, 각 인증기관들이 현 시점에서 현행 규정에 부합한 안전인증을 시행하려 하였으나, 인증신청 제조업체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, 해당 부품업체들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, 2005년6월30일 까지는 종전 적용방법으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, 2005년7월1일 부터는 현행규정에 따라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음